

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

□ 제정이유

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, 학습, 진로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 성장 및 개발 등을 돕기 위한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청소년 상담실의 위치 및 운영주체 명시(안 제2조 및 제3조)
-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(안 제6조)
-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자격 및 상담요원의 임용(안 제8조 및 제9조)
-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(안 제11조)
-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의 복무(안 제12조)
-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(안 제13조)
- 청소년 상담실 운영방법(안 제16조)

□ 검토의견

○ 법령적합성

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(지방청소년상담실),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3조(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)에 의거하여 청소년상담실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

○ 내용타당성

동 조례안 중 다음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

- 첫째, 현재 파주시 청소년 상담실은 여성회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파주 시청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
- 둘째, 상담실 운영요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규정(안 제9조)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